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준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71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08월 29일

발 의 자: 정준호, 강동길, 곽향기,
김경훈, 김기덕, 김재진,
남궁역, 박승진, 박유진,
박춘선, 박철성, 봉양순,
서준오, 송도호, 송재혁,
아이수루, 이상훈, 이소라,
,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임만균, 임종국,
최기찬, 최재란 의원(26
명)

찬 성 자: 김영옥, 김용일, 김원중,
김지향, 김춘곤, 김형재,
김혜영,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박 석, 박영한,
박환희, 소영철, 송경택,
유만희, 유정인, 이종태,
최민규, 허 훈, 홍국표
의원(21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소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 배출원(사업장)을 오로지 세탁소로 한정하고 있어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을 정의함(안 제2조제5호)
- 나. 소규모 배출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0조)

다. 소규모 배출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함(안 제21조)

라.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맞게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외한 생활주변의 소규모 배출원을 말한다.

제3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재정지원신청 등)”을 “(재정지원신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재정지원심의회 개최 등)”을 “(심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량공해저감과장·환경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을 “친환경차량과장·기후환경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사가장이 추천하는 해당 조합의 임원”을 “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사가장이 추천하는 해당 협회의 이사”를 “이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이사장이 추천하는 해당 조합의 임원”을 “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자 또는 해당 분야에 관심이 많은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이상의”를 “2 이상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에 대하여”를 “에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에 대하여”를 “에게”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인증·보급 되지”를 “인증·보급되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출고당시보다”를 “출고 당시보다”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5조의2제3호 중 “차령과”를 “차령을 고려하거나”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에 대하여”를 “에게”로 한다.

제20조 앞에 “제4장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 규제 및 지원”을 삽입한다.

제20조의 제목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을 “(소규모 배출원 규제)”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소규모 배출원 규제) 시장은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제조·공급 또는 판매 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
2. 세탁소, 인쇄소, 도장시설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등 방지시설 설치
3. 직화구이 음식점 등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소규모 배출원 지원) 시장은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규모 배출원에 개인이나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회수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외한 생활주변의 소규모 배출원을 말한다.</p>
<p>제3조(적용)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보급, 저공해 조치 또는 조기폐차 권고,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u>아니한</u> 사항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이나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적용) ----- ----- ----- ----- <u>않은</u> ----- ----- -----.</p>
<p>제4조(재정지원대상)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는 <u>자에 대하여</u>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 및 융자(이하 “재정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는 재정지원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p>1. ~ 3. (생략)</p>	<p>제4조(재정지원대상) ----- ----- <u>자에게</u>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제9조(재정지원신청 등) (생략)

제10조(재정지원심의회 개최 등) ① ~ ② (생략)

③ 심의회의 의장은 기후환경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차량공해저감과장·환경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 및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
2.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추천하는 해당 조합의 임원 2명
3. 사단법인 한국도시가스협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해당 협회의 이사 1명
4.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추천하는 해당 조합의 임원 1명
5. 대기환경보전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해당 분야에 관심이 많은 자 1명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생략)

제13조(융자금대출) ① 수탁은행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수탁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자금을

제9조(재정지원신청) (현행과 같음)

제10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친환경차량과장·기후환경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 -----
-----사람으-----.

1. ----- 의원 ---
2. ----- 임원 ---
3. ----- 이사 ---
4. ----- 임원 ---
5. -----
----- 사람 ---

④ ----- 2 이상 의 -----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융자금대출) ① -----
-----에게 -----

대출한다.

② (생략)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재정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자금의 적정사용여부 등을 연 2회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5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중 5등급이면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않은 의무대상 자동차
2. 출고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
-----에게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류) -----

-----.

1. -----
----- 인증·보급되지 -----

2. -----

-----.

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2(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건설 기계의 종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이하 “의무대상 건설기계”라 한다)로 한다.

1. ~ 2. (생략)
3. 그 밖에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설기계

제18조(자동차 정비 및 저공해 조치 권고)

- ① (생략)
- ② 시장은 저공해 의무대상 이외의 경유자동차라 할지라도 일정대수 이상의 경유자동차를 보유한 사업자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 ① 시장은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 출고 당시보다 -----

그러하지 않다.

제15조의2(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건설 기계의 종류) -----

-----.

1. ~ 2. (현행과 같음)
3. ----- 차령을 고려하거나 -----

제18조(자동차 정비 및 저공해 조치 권고)

- ① (현행과 같음)
- ② -----

-----에게
-----.

제4장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 규제 및 지원

제20조(소규모 배출원 규제) 시장은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제조·공급 또는 판매 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
2.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설치명령(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명령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하여 개인이나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제조·공급 또는 판매 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
2. 세탁소, 인쇄소, 도장시설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등 방지시설 설치
3. 직화구이 음식점 등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제21조(소규모 배출원 지원) 시장은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규모 배출원에 개인이나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회수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